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7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5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서명옥 · 안철수
서천호 · 이만희 · 엄태영
윤상현 · 김정재 · 박성훈
김용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 등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.

그러나 저성장의 심화 및 경기 침체의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 진작 및 내수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6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이라 한다)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~ 4. (생략) ② ~ ⑩ (생략)	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~ ⑩ (현행과 같음)
--	--